

의안번호	2215646
의 퇴 인	손명수의원
회 답 일	2026.6.4.
추계번호	25B7130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철도 수유실 미설치 역사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9억 6,5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59억 8,700만원(연평균 11억 9,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(안 제10조제2항)	2,965	3,022	-	-	-	5,987	1,197

주 1.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2.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업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, 향후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
1	안 제10조제2항 신설 (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)	「도시철도법」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「철도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에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기준·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 (제2항 신설) 1. 휴게시설의 용도 및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.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설비를 마련할 것 3.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적절한 물품을 구비할 것	의무규정
2	안 부칙제2조 (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	이 법 시행 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조제2항 (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)	○	• (추계)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추산
2	안 부칙제2조 (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현행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등 여객시설에는 수유실을 별도로 마련한 임산부 휴게시설을 설치·유지·관리의무를 부과하고, 안 부칙2조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일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2026년 조사시점에 미설치된 역사에 이를 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을 추산함
- 이에 따라 미설치 역사에 수유실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 -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관리 185개 역사, 도시철도 194개 역사에 수유실이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며, 코레일 관리 역사의 운영비용은 코레일이 부담하고, 도시철도 역사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수유실 설치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추산함¹⁾

1) 「도시철도법」

제19조(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)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.

1.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자기자금(自己資金)
2. 도시철도를 건설·운영하여 생긴 수익금
3.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

-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등 적용²⁾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철도역사 중 수유실 미설치 역사에 대한 수유실 설치비용으로 설치대상 물량에 단가를 곱하여 추산함
 - 물량: 도시철도 194개 역사를 2년 동안 균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 - 단가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, 급배수 시설 개보수, 냉난방기 설치 등을 포함한 개소당 표준 공사비용 30백만원으로 가정함
- (추계결과)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중 수유실 미설치 역사에 수유실을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수유실 설치비용 $A=(a \times b)$	2,965	3,022	-	-	-	5,987
물량(a, 개소)	97	97	-	-	-	194
단가(b, 백만원)	30.6	31.2	-	-	-	-

- 주 1.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 2.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평균사업비 단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역사별 급수환경 등에 따라 설치비용은 상이할 수 있음

5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 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)로부터의 차입·출자 및 기부
 6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 7.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 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(2025.9.)

(단위: %)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명목임금상승률	3.2	3.3	3.3	3.3	3.3	3.3
소비자물가상승률	1.9	2.0	2.0	2.0	2.0	2.0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업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, 향후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